



제312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정례회)
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

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6.

자치행정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청년의 나이를 「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, 경기도 지급 방식 등 사업 개편 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청년의 정의를 「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와 일치하도록 규정 (안 제2조제1호)
-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을 ‘분기별’에서 ‘일시금’ 지급으로 변경 (안 제5조제1항)
 - 분기별 25만원 → 일시금 100만원
- 그 밖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관련 사항은 「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의 기본계획을 따른다고 규정 (안 제5조제2항)
 - 사용항목 : 무제한(단, 유흥 및 매출액 12억 이상 제한) → 9개 분야
 - 사용지역 : 거주지 시군 내 → 경기도 전역
 - ※ 9개 분야 : 대학등록금, 어학연수, 학원 수강료, 응시료, 면접 준비금, 창업 임대료, 통신 요금 주거비, 문화예술 등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청년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3. 31. ~ 2025. 4. 20.(20일 간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「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나이로 통일하고 지급 방법을 분기별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한편,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「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의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,

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,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분기별 지급에서 일시금 지급으로, 사용지역을 「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의 기본계획에 따라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 본인들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에 청년기본소득의 계획적인 사용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,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사용항목을 무제한에서 대학등록금, 어학연수, 학원 수강료 등 9개 분야로 제한을 둬으로써 취지와 달리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,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역량 개발 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용이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존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.

☑ 「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「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5.3.12.]

2. ~ 3. (생략)

4. (삭제)

제6조(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·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. <개정 2025.3.12.>

-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 [전문개정 2025.3.12.]

- ③ 삭제 <2025.3.12.>

☑ 「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」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재정 수반 요인

-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 변경(분기별 → 일시금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
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

○ 당초 24세 청년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였고, 조례 개정 후에도 24세 청년 1인당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로 대체 하고자 함

[참고] 기존 2025년 예산편성액 (계속사업)

총 사업비(천원)	도비(천원)	시비(천원)
8,134,000	5,693,800	2,440,200

4. 작성자 :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장 박미경